

소방청 전문경력관(소방정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소방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7월 26일
소방청장

1 임용예정인원 (4개 직위, 총 15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시기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전문경력관 가군 (소방정대 항해담당)	3명	'24년 10월(예정)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부산)
전문경력관 가군 (소방정대 기관담당)	3명		
전문경력관 나군 (소방정대 항해·통신담당)	6명		
전문경력관 나군 (소방정대 기관담당)	3명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소방정대 항해담당	전문경력관 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선 항해, 선체 및 부속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선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지원·보조에 관한 사항○ 소방선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선 주요 직무(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에 관한 사항○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사항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소방정대 기관담당	전문경력관 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선 기관 및 부속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정박, 계류, 보급 관련 업무 및 연료 등 유류 저장·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주요 직무(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에 관한 사항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사항
소방정대 항해통신담당	전문경력관 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선 항해, 선체 및 부속기기(통신설비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주요 직무(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에 관한 사항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사항
소방정대 기관담당	전문경력관 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선 기관 및 부속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정박, 계류, 보급 관련 업무 및 연료 등 유류 저장·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주요 직무(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에 관한 사항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경력관 규정,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9.12.)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9.12.) 기준]

- 전문경력관 가군 (소방정대 항해담당)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소방정대 항해담당	응시 자격 요건	자격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2급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후 상선 1등 항해사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2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 전문경력관 가군 (소방정대 기관담당)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소방정대 기관담당	응시 자격 요건	자 격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2급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후 상선 1등 기관사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 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2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 전문경력관 나군 (소방정대 항해·통신담당)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소방정대 항해·통신 담당	응시 자격 요건	자 격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2급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 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2~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 전문경력관 나군 (소방정대 기관담당)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소방정대 기관담당	응시 자격 요건	자 격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2급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 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2~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①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함
※ 자격증 기준 중 해당하는 사항을 한가지 선택하여 응시
- ② 응시자격요건의 **자격증 소지 및 경력의 계산**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4.9.12.) 기준**으로 판단함
- ③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4.8.6.)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 ④ 경력, 학위, 우대요건의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자격증의 범위

- ①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②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응시자격 요건(자격증) 및 우대요건]

- ①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함(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②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담당업무 미기재,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담당업무를 기술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재(각종 증명서류 미제출 시 관련 업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수 제출)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경력 산출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③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p.11 참고)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8.6.) 기준]

항해	전문경력관 가군	○ 최근 36개월 이내에 상선 1등 항해사 이상으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 장착 선박(Drill Ship, Survey Ship, Cable Ship 등)의 항해사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전문경력관 나군	○ 최근 36개월 이내에 상선 2등 항해사 이상으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 장착 선박(Drill Ship, Survey Ship, Cable Ship 등)의 항해사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기관	전문경력관 가군	○ 최근 36개월 이내에 상선 1등 기관사 이상으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 장착 선박(Drill Ship, Survey Ship, Cable Ship 등)의 기관사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전문경력관 나군	○ 최근 36개월 이내에 상선 2등 기관사 이상으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 장착 선박(Drill Ship, Survey Ship, Cable Ship 등)의 기관사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 기관사 및 항해사 승무경력은 36개월 이내 경력[경력 및 직무에 따른 차등 우대]
 - ※ DPS경력은 최대 36개월 인정[경력에 따른 차등 우대]

○ 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적용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둘 중 하나를 선택 제출 / 가점은 시험단계별 적용)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실기시험

- 시험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기준: 당해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정표에 따라 평가항목 별로 평정하고 점수 부여

채용분야	실기시험 평가항목
전문경력관 가군 (항해)	① 항해계기/전파 및 레이더항법 ② 항로표지/해도(수로표지) ③ 기상 및 해상 ④ 선박의 구조 및 설비 ⑤ 선박의 이동 및 조종 ⑥ 선박의 복원성 ⑦ 관련법규 ⑧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⑨ BRM 및 승무원 관리 ⑩ 항해 및 해사 영어
전문경력관 나군 (항해·통신)	① 항해계기/전파 및 레이더항법 ② 항로표지·해도(수로표지)/기상 및 해상 ③ 선박통신운용 ④ 선박의 구조 및 설비 ⑤ 선박의 이동 및 조종 ⑥ 선박의 복원성 ⑦ 관련법규 ⑧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⑨ BRM 및 승무원 관리 ⑩ 항해 및 해사 영어
전문경력관 가·나군 (기관)	① 내연기관 ② 추진장치 ③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④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⑤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⑥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⑦ 기관관리 ⑧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방화 및 소화요령 ⑨ ERM 및 승무원 관리 ⑩ 기관 및 해사 영어

※ 시험은 필답형 및 구술평가로 진행(세부 범위는 28p 참고)

- 합격기준: 평정항목별 40퍼센트 이상, 전 평정항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

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다.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제2차시험(실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라. 신체검사서

- 대상: 전문경력관 가·나군(항해·기관)면접시험 대상자
- 제출방법: 면접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제출
 - 제출서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이외 서식 인정불가)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26p)
 - 수검병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 합격기준: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시험 일정

- 실기시험(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응시번호는 '24. 8. 19.(월) 10:00부터 119고시 마이페이지(원서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구분	시험일정	장소/방법
시험공고	'24. 7. 26.(금)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응시원서 접수	'24. 8. 1.(목) ~ 8. 6.(화)	119고시(119gosi.kr)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4. 8. 21.(수)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실기시험	'24. 8. 29.(목) ~ 8. 30.(금)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 ※ 실기면접시험은 시험일정 기간 중 하루 응시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24. 9. 3.(화)	
면접시험	'24. 9. 11.(수) ~ 9. 12.(목)	
최종합격자 발표	'24. 9. 26.(목)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4. 8. 1.(목) 10:00 ~ 8. 6.(화) 18:00
※ 문의전화: 044-205-7288(채용절차), 044-205-7290(응시자격, 서류안내)
- 접수방법: 119고시(119gosi.kr)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
 -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 (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접수내역)
 -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면접시험 시 신분증, 응시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면접시험일에 제출

- 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가군 7천원, 나군 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경력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 044-205-7290) 후 모든 서류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구분	내용
1. 제출서류 목록표	○ 제출서류 해당란에 “☑” 표기
2. 자기소개서 1부	○ A4 2매 이내로 작성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4매 이내로 작성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및 서명
5. 면허증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증
6. 자격요건 승무경력증명서 1부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2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기간 출력·제출
8.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기간 출력·제출
9.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1부	○ 폐업에 따른 근무경력 입증

아래 사항은 해당자만 제출

우 대 요 건	10. 우대요건 승무경력증명서 1부	○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요건에 대해 승무경력증명서 및 DPS 장착선박 증빙자료 제출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소득금액증명원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9. 27. ~ 10. 25.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10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절차: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8~94)

2) 직무 관련 사항: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053-712-1017)

※ 문의전화: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소방정대항해담당	전문경력관 가군	3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선 항해, 선체 및 부속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지원·보조에 관한 사항 ○ 소방선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주요 직무(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에 관한 사항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사항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 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의사소통능력, 전문지식 등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적사고, 문제해결능력, 상황대응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항법, 전파항법 등 항법 및 항해기기 운용·관리에 관한 지식 ○ 해사관계법령(국제 포함), 해양법 등 법령 및 선체 정비·관리에 관한 지식
------	--

응시자 자격요 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2급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후 상선 1등 항해사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2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6개월 이내에 상선 1등 항해사 이상으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 장착 선박(Drill Ship, Survey Ship, Cable Ship 등)의 항해사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기관담당)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소방정대기관담당	전문경력관 가군	3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선 기관 및 부속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정박, 계류, 보급 관련 업무 및 연료 등 유류 저장·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주요 직무(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에 관한 사항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사항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 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의사소통능력, 전문지식 등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적사고, 문제해결능력, 상황대응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선박 주기관, 보조기관 등에 관한 지식 ○ 소방선박 기관 비상조치, 손상제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	--

응시자격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2급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후 상선 1등 기관사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2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6개월 이내에 상선 1등 기관사 이상으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 장착 선박(Drill Ship, Survey Ship, Cable Ship 등)의 기관사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항해·통신담당)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소방정대항해·통신담당	전문경력관 나군	6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선 항해, 선체 및 부속기기(통신설비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주요 직무(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에 관한 사항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사항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 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의사소통능력, 전문지식 등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적사고, 문제해결능력, 상황대응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항법, 전파항법 등 항법 및 항해기기 운용·관리에 관한 지식 ○ 해사관계법령(국제 포함), 해양법 등 법령 및 선체 정비·관리에 관한 지식
-------------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응시자 자격요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자격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2급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2~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력</td> <td>○ 해당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위</td> <td>○ 해당없음</td> </tr> </table>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2급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2~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2급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2~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6개월 이내에 상선 2등 항해사 이상으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 장착 선박(Drill Ship, Survey Ship, Cable Ship 등)의 항해사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소방정대기관담당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선 기관 및 부속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정박, 계류, 보급 관련 업무 및 연료 등 유류 저장·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 주요 직무(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에 관한 사항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사항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 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의사소통능력, 전문지식 등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적사고, 문제해결능력, 상황대응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선박 주기관, 보조기관 등에 관한 지식 ○ 소방선박 기관 비상조치, 손상제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응시 자격요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자격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2급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2~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력</td> <td>○ 해당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위</td> <td>○ 해당없음</td> </tr> </table>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2급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2~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2급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2~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의한 승무경력은 제외)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6개월 이내에 상선 2등 기관사 이상으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 장착 선박(Drill Ship, Survey Ship, Cable Ship 등)의 기관사로서 승선경력이 있는 자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향해사	전문경력관 0군		
<input type="checkbox"/> 기관			

구분	연번	제출목록	제출 여부	
			제출	미제출
공통	1	제출서류 목록표		
	2	자기소개서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5	면허증		
	6	자격요건 승무경력증명서 1부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8	소득금액증명원 1부		
	9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1부		
우대 요건	1	우대요건 승무경력증명서 1부		
	2	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소득금액증명원 1부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2024. . . .

성명: (서명)

소방청장 귀하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번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요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3매(총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 색은 검정-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보고서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시험공고에 명시된 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 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2024.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이 사실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 . . . (년 월)

입증인(1)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처번호: - -

입증인(2)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처번호: - -

붙임: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소방청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 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210mm×297mm[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

실기시험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필답형 문제 + 구술평가

나. (평가시간) 필답형 문제 15분, 구술평가 20분

다. (진행순서) ① 필답형 문제 답변작성

② 구술평가 진행

③ 위원평가

라. (시험범위) 실기시험은 기술역량, 기본역량, 임무역량으로 나누어지며 각 역량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는 아래와 같음

채용분야	실기시험 평가항목
전문경력관 가군 (항해)	① 항해계기/전파 및 레이더항법 ② 항로표지/해도(수로표지) ③ 기상 및 해상 ④ 선박의 구조 및 설비 ⑤ 선박의 이동 및 조종 ⑥ 선박의 복원성 ⑦ 관련법규 ⑧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⑨ BRM 및 승무원 관리 ⑩ 항해 및 해사 영어
전문경력관 나군 (항해·통신)	① 항해계기/전파 및 레이더항법 ② 항로표지·해도(수로표지)/기상 및 해상 ③ 선박통신운용 ④ 선박의 구조 및 설비 ⑤ 선박의 이동 및 조종 ⑥ 선박의 복원성 ⑦ 관련법규 ⑧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⑨ BRM 및 승무원 관리 ⑩ 항해 및 해사 영어
전문경력관 가나군 (기관)	① 내연기관 ② 추진장치 ③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④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⑤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⑥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⑦ 기관관리 ⑧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방화 및 소화요령 ⑨ ERM 및 승무원 관리 ⑩ 기관 및 해사 영어

1) 항해(전문경력관 가군) / 항해·통신(전문경력관 나군)

- 기술역량

평가항목	평가요소
항해계기 / 전파 및 레이더항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해계기의 종류와 기능 2. 항해계기의 운용 3. 계기 오류 진단 및 문제 해결 4. 안전 및 유지관리 5. 계기의 상호운용성 6. 비상 대응 프로토콜 7. 레이더의 작동 원리 8. 레이더의 설정 및 최적화 9. 전파 항법 시스템의 이해 10. 레이더와 전파 시스템의 통합 사용 11. 안전한 항해를 위한 레이더의 활용 12. 전파 항법 오류 및 정정 13. 레이더 데이터의 해석 및 의사결정
항로표지 / 해도 (수로표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로표지의 종류와 기능 2. 항로표지의 시각적 및 전자적 통합 3. 비상 상황에서의 항로표지 활용 4. 항로표지의 날씨 및 환경적 영향 5. 전자 항로표지의 안전성 평가 6. 해도의 종류와 특징 7. 해도의 해석 및 응용 8. 전자 해도 시스템(ECDIS)의 통합 사용 9. 비상 상황에서의 해도 활용 10. 해도의 정확성과 오류 관리 11. 전자 해도의 안전성 평가 12. 해도의 정밀도와 해석 능력

평가항목	평가요소
<p>기상 및 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상 예보의 이해와 활용 2. 바람과 파도의 영향 3. 기상 조건의 급변에 대한 대응 4. 안전한 항해를 위한 기상 정보의 활용 5. 해상에서의 응급 기상 대처 기술 6. 기상 관련 장비의 이해와 사용 7. 기상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8. 해상 안전 규정과 기상 조건 9. 기상 조건에 따른 항해 전략 수정 10. 해상 기상 위험 평가 11. 기후 변화의 영향
<p>선박의 구조 및 설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 구조의 기본 이해 2. 엔진성능과 조선 특성 3. 프로펠러의 특성 이해 4. 선박의 안전 설비 5. 비상 상황 대비 설비 6. 동력 시스템과 기계 7. 전기 시스템의 이해 8. 통신 장비와 네비게이션 시스템 9. 선박의 화재 방지 시스템 10. 수리 및 유지 관리 계획 11. 선박의 배수 시스템 12. 환경 보호 설비 13. 선박의 구조적 강도 14. 선박 스테빌리티와 선체 균형 15. 비상 대응 시설의 신속한 접근 16. 선박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

평가항목	평가요소
선박의 이동 및 조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 조종의 기본 원리 2. 비상 조종 기술 3. 조종 장비의 사용 및 유지 4. 조종 능력의 평가 방법 5. 풍향 및 풍속에 따른 조종 6. 해류 및 조류의 영향 7. 저속 및 고속 조종 차이 8. 닫힌 수역(항구, 운하, 좁은 수로) 에서의 조종 9. 다른 선박과의 상호작용 10. 조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대처 방안 11. 선박 추진방식 특성 이해
선박의 복원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원성의 기본 원리 2. 복원성 영향 요소 3. 복원성 평가 방법 4. 비상 상황에서의 복원성 활용 5. 복원성 관련 국제 규정 준수 6. 복원성 향상을 위한 설계 요소 8. 복원성을 위한 구조적 강화 9. 복원성과 안전 운항 10. 복원성 점검 및 유지 보수 12. 복원성 교육 및 훈련 13. 비표준 조건 하의 복원성 14. 복원성 관련 위험 평가
선박통신운용 ※ 항해통신(전문경력관 나군) 분야만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 시스템의 종류와 기능 2. 비상 통신 절차 3. 통신 장비의 유지보수 4. 위성 통신의 이해 5. 통신 장애 대응

- 기본역량

평가항목	평가요소
관련법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3. 선박안전법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5. 해양환경관리법 6. 해사안전기본법 7. 해상교통안전법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상상황 인식 및 초기대응 2. 비상계획 및 절차이행 3. 손상평가 및 보고 4. 손상제어 및 복구조치 5. 비상훈련

- 임무역량

평가항목	평가요소
BRM 및 승무원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RM의 기본 이해 2. 통신 능력 3. 위기 관리와 의사결정 4. 리더십 & 팀워크 5. 기술적 이해와 적용
항해 및 해사 영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사 관련 문서 및 지침 이해 2. 해사 용어 사용 능력 및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술

※ 평가표_전문경력관 가군(항해)

응시번호		응시분야	항해	응시직급	전문경력관 가군
------	--	------	----	------	----------

실기 영역	배점 (100점)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4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 선발)	위원 평정	계
기술역량	10	항해계기 / 전파 및 레이더항법		
	10	항로표지 / 해도(수로표지)		
	5	기상 및 해상		
	10	선박의 구조 및 설비		
	15	선박의 이동 및 조종		
	10	선박의 복원성		
기본역량	10	관련법규		
	15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임무역량	10	BRM 및 승무원 관리		
	5	항해 및 해사 영어		

평가결과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 선발)	점
시험위원	성명 (서명)

※ 평가표_전문경력관 나군(항해·통신)

응시번호		응시분야	항해·통신	응시직급	전문경력관 나군
------	--	------	-------	------	----------

실기 영역	배점 (100점)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4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 선발)	위원 평정	계
기술역량	10	항해계기 / 전파 및 레이더항법		
	5	항로표지·해도(수로표지) / 기상 및 해상		
	15	선박통신운용		
	10	선박의 구조 및 설비		
	10	선박의 이동 및 조종		
	10	선박의 복원성		
기본역량	10	관련법규		
	10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임무역량	10	BRM 및 승무원 관리		
	10	항해 및 해사 영어		

평가결과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 선발)	점
시험위원	성명 (서명)

2) 기관(전문경력관 가군 / 전문경력관 나군)

- 기술역량

평가항목	평가요소
내연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연기관의 작동 원리 2. 연료 시스템 관리 3. 냉각 시스템 운용 4. 윤활 시스템 유지 5. 배기 시스템 이해 6. 엔진 유지 관리 7. 성능 유지 방안 8. 엔진 부하 관리 9. 고장 진단 기법 10. 비상 상황 대응 11. 엔진 제어장치의 이해 12. 동력 전달 시스템 13. 엔진 보증 및 점검 주기 관리
추진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진장치의 작동 원리 2. 추진장치의 유지보수 3. 추진장치의 고장 진단 및 해결 방법 4. 추진장치의 안전 운용 5. 추진장치의 비상 시 대응 6. 통합 제어 시스템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체기기의 기본 원리 2. 유체기기의 유지 보수 3. 유체기기의 고장과 진단 4. 유체기기의 최고 성능 유지 5. 유체기기의 안전한 운항 절차 6. 기름 여과장치의 운영 및 유지보수 7. 오수 처리 시스템 8. 해상 오염 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 9. 배기 가스 처리 기술 10. 오염 방지 기기의 비상 대응 프로토콜

평가항목	평가요소
<p>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기기의 기본 원리 2. 배전 시스템 3. 비상 전력 시스템 4. 전기 보호 장치 5. 선박 조명 시스템 6. 전력 시스템 관리 7. 전기 설비의 유지 보수 8. 고장 진단 및 문제 해결 9. 전기 안전 규정 10. 발전기 부하 관리 11. 전자회로의 기본 원리 12. 반도체 부품의 이해 13. 전자 기기의 진단 및 수리 14. 전자회로의 안전성 평가 15. 센서 기술 16. 통신 시스템 17. 디지털 신호 처리 18. 전자 보안 시스템 19.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응용
<p>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측 기술의 기본 원리 2. 전기계측 도구와 기법 3. 전자계측의 응용 4. 센서와 트랜스듀서 5. 신호 변환 기술 6. 데이터 수집 시스템 7. 측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8. 전자 계측기의 교정 9. 무선 계측 기술 10. 계측 시스템의 유지 관리 11. 기계적 결함 진단 계측 기술

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어 시스템의 기본 원리 2. PID 컨트롤러의 이해와 설정 3. 피드백 메커니즘 4.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5.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응용 6. 고장 진단 및 예방 7. 네트워크 기반 제어 8. 전력 전자 제어

- 기본역량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관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실 운영 원칙 2. 기관실 안전 관리 3. 기계 유지 보수 4.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5. 환경 규제 준수 6. 비상 대응 계획 7. 선교 제어시스템 이해 8. 효율적 인력 배치 9. 정기적 검사 및 감사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방화 및 소화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상 평가 방법 2. 비상 대응 계획 3. 선박 침수 시 대응 4. 구조적 안전성 확보 5. 비상 빌지 시스템 운용 6. 정전 시 비상 대응 7. 구명 장비 사용법 8. 비상 탈출 경로 관리 9. 통신 장비 활용 10. 고정식 소화설비의 작동 11. 재난 복구 계획 12. 비상 상황의 위험성 평가 13. 초기 화재 대응 14. 화재 통제 시스템

- 임무역량

평가항목	평가요소
ERM 및 승무원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RM의 원칙과 중요성 2. 승무원 교육 및 훈련 3. 의사소통 전략 4. 업무 배정 및 스케줄링 5. 위기 관리 6. 성능 모니터링 7. 안전관련 법령 준수 8. 기술적 문제 해결 9. 승무원 평가 10. 위험성 평가 및 관리 11. 승무원 동기 부여 12. 기술 업그레이드 및 혁신 13. 비상 대응 훈련
기관 및 해사 영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교범 번역 2. 기술도서 번역

※ 평가표_전문경력관 가나군(기관)

응시번호		응시분야	기관	응시직급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경력관 나군
------	--	------	----	------	----------------------

실기 영역	배점 (100점)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4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 선발)	위원 평정 (1~15점)	계
기술역량	15	내연기관		
	15	추진장치		
	15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5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5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5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기본역량	10	기관관리		
	10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방화 및 소화요령		
임무역량	10	ERM 및 승무원 관리		
	10	기관 및 해사 영어		

평가결과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 선발)	점
시험위원	성명 (서명)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